

# 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## 1. 대상 펀드:

no	펀드명	보수변경	환매수수료삭제	결산	변동성	이해관계인삭제	변경사항
1	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○	-	-	-	○	-
2	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(주식혼합)	○	-	-	-	○	8)
3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	○	○	-	-	○	-
4	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○	-	-	-	○	-
5	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-
6	미래에셋Eastern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○	○	3), 6), 7)
7	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6), 7)
8	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(채권)	-	-	○	○	○	6), 8)
9	미래에셋글로벌투자적격채권증권투자자신탁(H)(채권)	-	-	○	-	○	6)
10	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6)
11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	-	-	○	-	-	-
12	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-
13	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6)
14	미래에셋변액보험차이나증권투자자신탁(주식)	-	-	○	-	○	-
15	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6)
16	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6)
17	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지축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6)
18	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-
19	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-
20	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투자자신탁(UH)(주식-재간접형)	-	-	○	○	○	-
21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6), 7)
22	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)(분배형)	-	○	○	○	○	6)
23	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3), 6), 7)
24	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투자자신탁2호(주식혼합-재간접형)	-	-	○	○	○	-
25	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.5증권투자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형)	-	-	○	○	○	-
26	미래에셋차이나브라질업종대표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○	○	○	○	6), 7), 8)
27	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3), 8)
28	미래에셋친디아인프라섹터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3), 6)
29	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6)
30	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증권투자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○	-
31	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40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-
32	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40증권투자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○	-

2. 변경 사항:

- 1)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변경
- 2) 환매수수료 삭제
- 3) 가입자격 변경
- 4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6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8) 법 개정사항 반영
- 9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8월 25일 (목)

4. 변경 내용:

1)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변경

펀드명	변경 전 일반사무관리회사보 수율 (%)	변경 후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(%)
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<u>0.05</u>	<u>0.03</u>
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 1 호(주식혼합)	<u>0.05</u>	<u>0.03</u>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	<u>0.06</u>	<u>0.03</u>
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<u>0.05</u>	<u>0.03</u>

2) 환매수수료 삭제

- 미래에셋Eastern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1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	<p>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<u>종류A 수익증권</u> 30일미만:이익금의 10%</p> <p>2. <u>종류A-e 수익증권</u> 30일미만:이익금의 10%</p> <p>3. <u>종류C1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4. <u>종류C2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5. <u>종류C3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6. <u>종류C4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7. <u>종류C5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8. <u>종류C-2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9. <u>종류C-e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10. <u>종류C-I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11. <u>종류직판F 수익증권</u>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	
--	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p>[ A ] 30 일미만:이익금의 10%</p> <p>[ A-e ] 30 일미만:이익금의 10%</p> <p>[ C1, C2, C3, C4, C5, C-2, C-e, C-I, 직판 F ] 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(분배형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1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	<p><u>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<u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<u>1. 종류A 수익증권</u>  <u>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  <u>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</p> <p><u>2. 종류A-e 수익증권</u>  <u>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  <u>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</p> <p><u>3. 종류AG 수익증권</u>  <u>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  <u>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</p> <p><u>4. 종류C 수익증권</u>  <u>90일미만 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5. 종류C-e 수익증권</u>  <u>90일미만 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6. 종류CG 수익증권</u>  <u>90일미만 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7. 종류S 수익증권</u>  <u>90일미만 : 이익금의 70%</u></p>	
--	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[ A, AG ]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 <u>30 일 이상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 <u>[ A-e ] 3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 <u>30 일 이상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30%</u> <u>[ C, C-e, CG, S ] 90 일미만 : 이익금의 70%</u>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

[정관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4조 (환매수수료)	<u>①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주주가 그 주식을 보유한 기간(당해 주식의 매수일을 기산일</u>	<u>판매회사는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

	<p>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 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회사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 C1주식, 종류 C2 주식, 종류 C3 주식, 종류 C4 주식, 종류 C5 주식, 종류 S 주식, 종류 C-e 주식, 종류 CG 주식 &lt;개정 2014.04.23&gt; &lt;개정 2017.09.28&gt;</p> <p>가. 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p> <p>나. 90일 이상: 해당사항 없음</p>	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C, C-e, C2, C3, C4, C5, CG, S, 직판 F ]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차이나브라질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1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: 이익금의 10%</p> <p>2. 종류A-e 수익증권 30일미만: 이익금의 10%</p> <p>3. 종류C 수익증권 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	<u>4. 종류C2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	<u>5. 종류C3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	<u>6. 종류C4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	<u>7. 종류C-e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	<u>8. 종류C-e2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	<u>9. 종류C-e3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	<u>10. 종류C-e4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	<u>11. 종류C-a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	<u>12. 종류직판F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[ A, A-e ] 30 일미만:이익금의 10%</u> <u>[ C, C-a, C-e, C-e2, C-e3, C-e4, C2, C3, C4, 직판 F ]</u> <u>90 일미만: 이익금의 70%</u>	환매수수료 없음

3) 가입자격 변경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3 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p>종류 C-I  <u>법인세법 시행령 17 조의 2 의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,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,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(중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</u></p>	<p>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</p> <p>종류 C-I  <u>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),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,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</u>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6. 집 합투자기구의 구조 [종류형 구조]	종류 C-I 법인세법 시행령 17 조의 2 의제 8 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,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,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 구 (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간 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) 또는 이 투자신탁 수 익증권을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	종류 C-I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(외국법령에 의한 것 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), 법 시행령 제 10 조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-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 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), 100 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 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

5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8.39</u>	<u>21.62</u>
미래에셋Eastern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7.35</u>	<u>20.95</u>
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3	3	<u>10.99</u>	<u>10.03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3.48</u>	<u>4.37</u>
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1	1	<u>25.7</u>	<u>46.12</u>
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3.41</u>	<u>22.91</u>
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1	1	<u>27.38</u>	<u>52.48</u>
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1	1	<u>27.85</u>	<u>31.93</u>
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1	1	<u>34.54</u>	<u>33.86</u>
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 호(주식)	1	1	<u>29.13</u>	<u>27.52</u>
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 호(주식)	1	1	<u>30.09</u>	<u>27.93</u>
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7.96</u>	<u>18.47</u>
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(UH)(주식-재간접형)	2	2	<u>18.47</u>	<u>18.21</u>
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6.49</u>	<u>16.31</u>
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 혼합)(분배형)	4	4	<u>7.42</u>	<u>7.53</u>
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2.65</u>	<u>23.08</u>
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2호(주식혼합-재 간접형)	2	2	<u>16.93</u>	<u>16.65</u>
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.5증권투자신탁(주식-파생재간접 형)	1	1	<u>31.03</u>	<u>33.22</u>
미래에셋차이나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0.65</u>	<u>21.45</u>
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1.32</u>	<u>21.04</u>
미래에셋친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7.76</u>	<u>17.81</u>
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1.69</u>	<u>21.49</u>
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19.15</u>	<u>21.4</u>

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 혼합)	4	4	<u>7.03</u>	<u>7.81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 혼합)	4	4	<u>7.1</u>	<u>7.42</u>

6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가방법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<u>또는 집합 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</u>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(<u>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 시가</u>)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<u>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</u>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(<u>외국집합 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</u>)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<u>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 시가</u>)</p>

7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" <u>고난도금융투자상품</u> "이라 함은 <u>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</u>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<u>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</u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 사항 없음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8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</u> 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</u>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&lt;생략&gt;</u>	2. <생략> 나. <삭제>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  ②~③ <생략>  <신설>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 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 ②~③ <생략> 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<u>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</u>

		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-	--	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  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</u> <u>다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&lt;생략&gt;</u>	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

9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가.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</u>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 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\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계약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